'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·세출결산및
예비비지출승인안

의 안 번 호	67

제출일자 : 1998.9.1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,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, 기금, 채권,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주요골자

가.세입·세출 결산

(1)일반회계

-세입결산액 6조 3,705억 8,600만원
-세출결산액 5조 8,332억 8,400만원
-이월총액 5,373억 200만원

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·2·3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 등 이월액 총 4,617억 2,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 1,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0억 5,900만원임.

(2)특별회계(도시철도건설사업 등 7개 특별회계)

-세입결산액 2조 9,945억 5,800만원
-세출결산액 2조 2,587억 9,800만원
-이월총액 7,357억 6,000만원

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·2·3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 등 이월액 총 5,034억 2,7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,323억 3,300만원임.

(3)공기업회계(수도사업특별회계)

1997년말 현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은

가)세입예산결산

-수익적수입 4,287억 8,700만원
-자본적수입 2,863억 8,900만원
◦합 계 7,151억 7,600만원

나)세출예산결산

-수익적지출 3,352억 9,500만원
-자본적지출 3,022억 9,800만원
◦합 계 6,375억 9,300만원

다)자금결산

-수 입 7,016억 4,900만원
-지 출 6,375억 9,300만원
◦이 월 액 650억 5,600만원

라)자 산

1997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은 2조 9,253억 900만원으로 1996년도말에 비하여 2,633억 1,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그 결산내용은

-유동자산 887억 3,600만원
-가동설비자산 2조 7,677억 2,000만원
-비가동설비자산 688억 5,300만원

마)부 채

1997년도말 현재의 부채총액은 6,501억 5,400만원으로

-유동부채 759억 6,400만원
-고정부채 5,741억 9,000만원

1996년도말에 비하여 1,266억 1,000만원이 증가하였음.

바)자 본

1997년도말 현재의 자본총액은 2조 2,751억 5,500만원으로 1996년도말에 비하여 1,36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자본결산 내용은

-원시자본금 34억 9,800만원
-자본잉여금 2조 18억원
-이익잉여금 2,698억 5,700만원

사)손 익

1997년도말 당가순이익은 320억 9,300만원으로 1996년도말에 비하여 190억 2,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,

그 내용은

-수 익 4,301억 4,500만원
-비 용 3,980억 5,200만원
-당기순이익 320억 9,300만원

나.기금결산

1997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8,195억 8,200만원으로 1996년도말에 비하여 946억 1,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17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

-재정투융자기금 4,100억 4,400만원
-신청사건립기금 800억원
-식품진흥기금 330억 2,900만원
-재해구호기금 645억 8,900만원

-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
-노인복지기금 100억 1,000만원
-여성발전기금 61억 3,100만원
-청소년자립지원기금 129억 6,900만원
-중소기업육성기금 1,199억 8,800만원
-도시가스사업기금 46억 8,200만원
-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60억 4,800만원
-농촌지도자육성기금 3억 5,700만원
-문화예술진흥기금 179억 9,700만원
-도로굴착복구기금 249억 7,500만원
-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주민기금 37억4,800만원
-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,800만원
-재해대책기금 219억 6,700만원

다.채권현재액

1997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,332억 7,200만원으로 1996년도말에 비하여 2,124억 3,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채권의 회계별 결산내역은

-일반회계 1,617억 1,900만원
-특별회계 3,715억 5,300만원

라.채무결산

1997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9,152억 3,100만원으로 1996년도말에 비하여 1조 564억 5,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

-일반회계 451억 5,300만원
-특별회계 7,870억 4,300만원
-공기업회계 830억 3,500만원

채무종류별 내역은

-증권채 2,984억 7,800만원
-차입금 3,796억 4,700만원
-해외차관 1,792억 4,500만원
-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578억 6,100만원

마.예비비 지출

(1)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예비비예산액 1,236억 6,400만원
-지출결정액 1,152억 6,400만원
-지 출 액 1,129억 5,800만원
-이 월 액 1억 400만원
-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22억 200만원임.
-그 사용내역은 '97.2.12.일자 서울시의원 재선거 추진경비, 서소문별관 로비민원안내 및 상담시설설치추가공사, 시민대설치 운영에 따른 추가경비 등 25건임.

(2)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예비비예산액 517억 9,500만원
-지출결정액 51억 9,300만원
-지 출 액 40억 6,600만원
-이 월 액 7억 1,700만원
-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4억 1,000만원임.
-그 사용내역은 천호지하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에 따른 부족예산, 교통방송본부 신청사관리위탁 제소요 경비 등 14건임.

(3)공기업회계(수도사업 특별회계)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예비비예산액 52억 6,000만원
-지출결정액 15억 6,900만원
-지 출 액 15억 5,800만원

지출결정액중 이월액은 없으며, 미집행액은 1,100만원으로 사용내역은 단가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, 직원정산교육훈련비, 사무실 수선비, 오류제1구역 재개발사업지구내 상수도공사, 암사정수장 확장구간 토지매입비 등 5건임.

바.계속비 집행

(1)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현황은

-계속비예산액 1,135억 5,600만원
-예 산 현 액 1,828억 3,500만원
-지 출 액 1,069억 8,600만원
-이 월 액 758억 4,900만원
-예산현액중 지출내역은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9건이며, 미집행액은 없음.

(2)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현황은

-계속비예산액 1조 251억 100만원
-예 산 현 액 1조 869억 1,100만원
-지 출 액 6,894억 9,200만원
-이 월 액 3,974억 1,900만원
-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도시철도건설사업뿐이며 미집행액은 없음.

(3)공기업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없음.

3.참고사항

가.지방자치법 제120조

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나.지방자치법 제125조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

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다.지방재정법 제40조

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세출예산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라.지방공기업법 제35조

①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②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'97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
세입·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69

제출년월일 : 1998.9.2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첨과 같이 세입·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받고자 함.

2.결산개요

○세입세출예산액 : 금 2,896,941,334천원
○세 입 결 산 액 : 금 3,053,235,932천원
○세 출 결 산 액 : 금 2,826,457,256천원
○세 계 잉 여 금 : 금 226,778,676천원
○명 시 이 월 액 : 금 36,166,564천원
○사 고 이 월 액 : 금 133,753,766천원
○계 속 비 이 월 : 금 20,346천원
○국고보조금잔액 : 금 0
○순 세 계 잉 여 금 : 금 56,838,000천원

3.근 거

○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
○지방자치법 제120조
○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

4.제안설명 : 별첨

서울특별시의회의정발전연구팀
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개선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정발전연구팀(이하 "의정발전연구팀"이라고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의정발전연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102인 이내의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②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으로 보하며 직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7급 이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유휴인력을 활용한다.

제3조(기능) ①의정발전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방자치발전제도에 관한 사항
2. 서울특별시의회발전에 관한 사항
3. 서울특별시의회 의안·청원 관련자료의 수집·연구·검토
4. 의원의 지시사항 처리 등

②팀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팀원의 사무를 지정한다.

제4조(근무명령 등) 의정발전연구팀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원 근무명